

학생이 행복하고, 사회가 신뢰하는 미래인재 양성대학

# 장안대학교

수 신 장안대학교 교수회

(경유)

제 목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요청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임 요청

1. 귀 교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,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원 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「교원 인사규정」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교원위원 선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
3. 이에 세부 내용을 검토하시어,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아 래 -

## 1.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요청

- 가. 관련근거 : 장안대학교 교수회규정 제5조(기능), 제6조(소집)
- 나.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 운영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, 현행 교원인사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「교원인사규정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다.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교수회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시어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특히 이번 의견수렴은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규정 개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조문별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1) 의견수렴 대상 : 장안대학교 전임교원
  - 2) 의견수렴 안건 : 교원인사규정 개정안
  - 3) 의견 제출방법
    - (가) 교수회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·토론 후 의견 확인
    - (나) 기타 교수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의견 제출
  - 4) 제출 사항
    - (가)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성·반대 의견  
(개정안 찬성 ○○명, 반대 ○○명, 기권 ○명)
    - (나) 조문별 수정·보완 의견 및 기타 교원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
- 마. 의견수렴 결과는 향후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- 바. 교수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출된 의견은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의 최종 검토 및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하도록 하

겠습니다.

붙임 1.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1부.

## 2.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임 요청

가. 관련근거 : 노사협의회 규정 제7조 (협의회의 구성)

나. 노사협의회 교수회 추천 근로자위원 3명 중 1인(성백순 교수)이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근로자위원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.

다.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 추천 근로자위원 1인을 재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  끝.

장 안 대 학 교 총 장



★계장

김봉식

교무처장 류경희

결재 08/21  
총장 이종진

협조자

시행    교무팀-2026-000643(시행일자:2026.08.21) 접수

우 1833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

전화 031-299-3323

전송

/ bskim@jangan.ac.kr

/ http://www.jangan.ac.kr

/ 공개(호)